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149호(號) 1934(昭和 9)년 3월 12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99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 내 철도·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朝鮮內鐵道·軌道及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1934(昭和 9)년 3월 20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8(昭和 13)년 3월 1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25조(條) 신문지(新聞紙)·잡지(雜誌)의 운임(運賃)은 아래[左]와 같이 함. 단(但) 국선(局線)과 북선선(北鮮線) 간(間)은 1선(線)으로 간주(看做)하고, 국선(局線)과 북선선(北鮮線) 간(間)에만 연대(連帶)할 경우는 국(局)이 정한 바[所定]에 의(依)함.

2선(線) 연대(連帶)의 경우 1킬로그램(斤) 당(當) 1전(錢) 6리(厘) 최저운임(最低運賃) 3전(錢)
3선(線) 연대(連帶)의 경우 1킬로그램(斤) 당(當) 2전(錢) 5리(厘) 최저운임(最低運賃) 4전(錢)
전항(前項) 운임(運賃)의 계산(計算)은 특별급(特別扱)에 의(依)한 것에 있어서는 임률(賃率)을 동일(同一)한 것마다 1발역[發驛] 1일분(日分) 신문지(新聞紙)·잡지(雜誌) 탁송서(託送書) 기재(記載)의 총중량(總重量)에 의(依)해 계산(計算)하고, 이단위[厘位]는 임률(賃率)이 다른 것과의 합산액(合算額)으로서 이것을 절사(切捨)하되 특별급(特別扱)에 의(依)하지 아니한 것은 1개(箇)마다 그 운임액(運賃額)을 계산(計算)하고 이단위[厘位]가 발생한 때는 이것을 절사(切捨)함.